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맹성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13

발의연월일: 2020. 6. 25.

발 의 자: 맹성규·양정숙·홍기원

이용호 • 전혜숙 • 윤관석

신정훈・정춘숙・윤재갑

양이원영•박성준•오영환

오영훈 · 정일영 · 황운하

권인숙 · 고영인 의원

(179]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지하철·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전후에 걷거나 자전거를 탄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교통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'광역알뜰교통카드' 사업이 서울 일부지역, 부산, 경기, 인천 등 전국 108개 시·군·구에서 시행되고 있음.

이와 관련한 2019년 시범사업의 실적 분석에 따르면 이용자 월 평균 12,246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2~3 0대 연령층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고, 대중교통 및 보행·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와 승용차 이용 감소를 통한 교통혼잡 완화 등의 정책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,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광역알뜰교통카드와 같은 대중교

통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데이터를 기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데이터 기반 산업을 진흥하고 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5호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지방자치단체"를 "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교통카드데이터와 보행 및 자전거 이용 데이터 등 다른 교통데이터를 연계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사업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	제12조(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
정지원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	정지원)
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	
촉진을 위하여 <u>지방자치단체</u>	<u>지방자치단체,</u>
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	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
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	
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	
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	
자할 수 있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5. 교통카드데이터와 보행 및
	자전거 이용 데이터 등 다른
	교통데이터를 연계한 대중
	교통 활성화 지원 사업
<u>5.</u> (생 략)	<u>6.</u> (현행 제5호와 같음)